탄 원 서

항소심 제출용 · 개별 형사책임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재판장님 및 재판부 귀중
사건 2026노648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고인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탄원 취지 무죄 판단 요청 및 예비적 형 감경 탄원

---

1. 현장 지휘관 한 사람의 책임을 정확히 살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저는 목현태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사건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개별적인 형사책임이 정확히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회를 지키는 자리에 있던 경찰 지휘관이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헌법적 측면에서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린 지휘부와 현장에서 급박하게 지시를 전달받은 지휘관이 똑같은 정보, 똑같은 재량, 똑같은 선택 가능성을 가졌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건 전체의 심각성 때문에 현장 지휘관의 고의가 사후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그가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각 순간에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 1심 유죄의 이유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제1심은 목현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국회경비대원에게 국회의원과 민간인의 출입을 막게 하였고, 국회 관계자들의 항의와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에도 통제를 계속했으며, 군의 국회 진입을 목격한 뒤에는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목적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재판부가 엄격히 다뤄야 할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계획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요한 경계는 '최초 지시를 받았을 때'와 '현장에 들어온 정보에 따라 목적을 인식했다고 평가되는 때' 사이에 있습니다.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든 시간대의 행위를 같은 인식 아래 행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상급자 명령의 내용과 피고인의 확인 노력도 살펴 주십시오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국회에 대한 집회·시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질서유지 차원의 명령이라고 이해했고, 상부에 국회의장 등 출입 제한의 타당성을 여러 차례 되물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밤 10시 50분대의 통화에서 국회 보호 목적이 아닌지 확인하거나 국회의장 출입 통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통화 녹음과 증인의 진술로 확인되는지, 확인 요청 이후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내용이 명백하다면 현장 지휘관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시 내용이 모호했고, 피고인이 다른 설명을 기대하며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의의 형성 시점과 주관적 인식, 그리고 양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의 구조를 면책의 근거로 삼지 마시되, 그 구조가 선택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4. 항의·군 진입·출입 허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판단해 주십시오

제1심과 특검은 국회 관계자로부터 국회의 헌법상 권한에 관한 항의를 듣고도 차단을 계속한 점, 현장에서 군의 국회 진입을 보았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위법한 목적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항의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군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군의 구체적인 임무를 인식했는지, 각 인식 이후 피고인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따로 필요합니다.

변호인 측은 자정 무렵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특검 측은 그 출입이 목현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관련 증언이 일관된지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출입이 허용된 사실 자체와 그 허용을 누가 지시하였는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께서는 당직 대원의 증언, 통신기록, 출입 기록과 현장 영상을 대조하여 실제 지시자를 밝혀 주십시오.
출입 허용이 확인된다면 그 의미를 살피되, 몇 명의 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출입 차단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5. 죄의 성립과 책임의 정도를 섬세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형법 제87조 제2호와 제91조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은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 시점 이후 미필적 인식이 생겼다고 보려면 그 시점에 도달한 정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정, 그 뒤의 지시·행위를 연결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도 국회경비대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하여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어떤 권리를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유죄가 유지되는 경우의 양형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심은 피고인의 지휘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 일부 출입 허용 정황, 공직생활과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사정을 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자나 최고 지휘관의 책임과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밝힌 반성과 사과가 실제 진술에 부합한다면, 그 태도 역시 법에 정해진 양형 요소 안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주거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석 허가 자체는 무죄나 반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조건 준수와 성실한 출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자료는 소송 태도의 일부로 정확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파면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 형벌이 대체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발생한 직업적·사회적 결과를 사실대로 살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7.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경찰도 그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엄격한 법치주의는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실제로 알고 선택하고 실행한 것만큼 책임을 묻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현태 피고인에게 도달한 정보의 시각과 내용, 상관 지시에 대한 확인 노력, 일부 출입 허용 여부와 실제 지시 주체, 현장에서의 행위 및 그 이후 인식의 변화를 면밀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유죄의 증명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시고, 유죄가 유지된다면 실제 역할과 개별 사정에 맞는 최대한의 관대한 형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실제 제출 시 기재사항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